

규정/REGULATION MONTGOMERY COUNTY PUBLIC SCHOOLS

관련 항목:	ACA, ACF, ACF-RA, ACH, ACH-RA, COA, COB-RA, COC-RA, COE-RA, COF-RA, COG-RA, EBA-RA, EBJ-RA, EBK-RA, ECC-RA, EEA-RA, EKA-RA, GKA-RA, IGN, IGO-RA, JFA, JFA-RA, JGA, JGA-RA, JGA-RB, JGA-RC, JGB-RA, JHC, JHC-RA, JHF-RA, JHG-RA, JPD, JPD-RB, 협상된 동의
책임 맡은 사무실:	Chief Academic Officer 수석 행정 책임관(Chief Operating Officer)

행동적 위협 평가 (Behavior Threat Assessment)

I. 목적

조사에 따른 위협적 행동의 평가 절차를 책정하며 적절한 예방과 교정 측정을 제공하여 학교 환경의 안전과 보안을 유지하고 잠재적 희생자를 보호하고 도와 평가를 받은 개인에게, 필요한 경우, 도움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II. 정의

A. *위협 평가(threat assessment)*는 잠재적 위험 또는 폭력적인 상황을 식별하고 이를 평가하고 관리하고 알리기 위해, 관찰되는(또는 분별력 있게 관찰된) 행동에 초점을 둔 종합적인 평가 절차입니다.

1. A *위협적 태도 평가(behavior threat assessment)*는 개인 또는 그룹에 의한 대상을 목표로 한 폭력의 위협 위험을 알리고 평가하고 관리하기 위한 일련의 구조적 절차입니다.
2. “*폭력의 경로(Pathway to Violence)*”는 목표 대상이 있는 폭력은 생각으로 시작하여 생각이 쌓여서 공격으로 이어지는 생각과 행동 과정의 최종 결과인 개념에 입각한 연구에 따른 폭력 평가 절차입니다.
3. 위협 평가는 대립절차나 훈육절차가 아닙니다.

- B. **위협(threat)**이란 신체적 위해를 가할 의도의 표현을 의미합니다. 위협은 행동, 언어, 시각, 글, 전자 또는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 표현/전달되는 것; 관찰되거나 위협대상에게 직접적으로 또는 제삼자에게 전해지거나 관찰되거나 또는 전해지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경우 위협으로 간주; 위협 대상이 위협을 인식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위협으로 간주합니다. 위협은 직접(예: "너를 때릴 거야/I am going to beat you up.") 또는 간접(예:"제를 잡을거야/I'm going to get him")으로 이루어집니다.
1. **낮은 위협(low risk threat)**은 개인/상황은 개인/상황이 심각한 상해의 위협으로 보이지 않으며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염려 사항으로 보일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낮은 위협은 일반적으로 *Montgomery County Public Schools(MCPS) 학생의 행동 규범(Student Code of Conduct)*에 따른 학교의 훈육 절차에 따라 다루어 집니다. 행동적 위협 평가 팀(Behavior Threat Assessment Team-BTAT) (III, A 와 B 참조)은 적절한 경우, 학생에게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상의를 할 수 있습니다.
 2. **중도 위협(moderate risk threat)**은 개인/상황은 개인/상황이 심각한 상해의 위협으로 보이지 않으나, 현 상황에서 앞으로 폭력 또는 심각한 상해를 야기할 의도 또는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보일 경우 그리고/또는 중재가 요구되는 염려되는 행동을 보일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중도 위협은 학교의 훈육 절차와 병행하여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3. **높은 위협(high risk threat)**은 개인/상황은 개인/상황이 심각한 상해의 위협으로 보이며, 계획을 이루기 위해 지속적으로 상해 의도와 노력을 보이고 중재가 요구되는 염려되는 기타 행동을 할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높은 위협은 학교의 훈육 절차와 병행하여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4. **임박한 위협(imminent threat)**은 개인/상황은 개인/상황이 심각한 상해의 위협으로 보이지 않으나, 현 상황에서 앞으로 폭력 또는 심각한 상해를 야기할 의도 또는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보일 경우 그리고/또는 중재가 필요한 염려되는 행동을 보일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임박한 위협은 학교의 훈육 절차와 병행하여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5. **A 관련되지 않은 사람(non-affiliated person)**은 MCPS 교직원, 학생, 계약자, 가족 또는 학생의 친구나 직원이 아닌 사람입니다.

C. 공중 정신건강 서비스 코디네이터

MCPS 에는 Office of Student and Family Support and Engagement(OSFSE)에 교육구 전체의 정신 건강 서비스 코디네이터가 학교와 교육구를 위해 상주하고 있으며 다음의 책임이 있습니다 -

1. 기존의 정신 건강 서비스와 정신 건강 서비스 인계로의 절차
2. Montgomery County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DHHS)와 지역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 기관과 협력하여 학생을 치료로 인계합니다.
3. DHHS 와 타 기관과 협력하여 정신건강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받기 위한 외부 예산을 찾아 제안합니다.
4. 행동적 문제를 보이는 학생에게 행동 건강과 이에 관련 서비스를 적절하게 조정하고 제공할 수 있도록 학교에 도움을 제공합니다.

III. 행동적 위협 평가 절차

A. 교육구 행동적 위협 평가(Behavior Threat Assessment)

1. 교육감은 감독과 학교 행동적 위협 평가 팀(behavior threat assessment teams-school-based BTATs)에의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교육구 행동적 위협 평가 팀(Behavior Threat Assessment Team-districtwide BTAT)을 책정해야 합니다. 교육구 BTAT 는 OSFSE, Office of School Support and Improvement(OSSI), Office of Employee Engagement and Labor Relations(OEELR), Office of Special Education(OSE), Office of the General Counsel(OGC) 행정담당과 필요한 경우 기타 MCPS 교직원들을 포함하며 OSFSE 의 Psychological Services 디렉터/대리인과 Department of Systemwide Safety and Emergency Management 의 chief safety officer/대리인이 함께 인도해야 합니다.
2. 교육구 BTAT 는 법 집행기관과 공공 안전 기관, 정신건강 제공자, 필요한 경우, DHHS 와 상의합니다.
3. 교육구의 BTAT 는 다음을 이행해야 합니다 -

- a) 학교 행동적 위협 평가(Behavior Threat Assessment) 팀을 감독합니다.
- b) MCPS, DHHS, 커뮤니티 정신 건강, 법 집행 기관, 기타 공공 안전 기관 간의 효과적인 정보교환 절차를 유지합니다.
- c) MCPS 의 위협 평가 절차의 효율성을 평가합니다.
- d) 제일 좋은 방법을 반영한 효과적 위협 평가 절차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규정과 절차의 변경을 추천합니다.
- e) 학교 BTAT 일원이 평가를 온전히 실행하기 위해 온전히 훈련되어 있지 않거나 일원이 없을 경우, 학생과 MCPS 학생이 아닌 개인(교직원, 계약자, 자원봉사자, 관련 없는 자를 포함)의 위협적 행동에의 행동 위협 평가를 학교와 사무실(해당할 경우)에의 영향을 상의하며 실시합니다.

B. 학교의 BTAT

1. 각 학교는 학교장 또는 교습과 학습에의 경험이 있는 건물 행정담당인 대리인, 학교 리소스 담당자(School Resource Officer-SRO) 또는 법 집행기관 대리인, 학교 보안팀 지도자와/또는 교육구 보안 코디네이터가 포함되어 있는 BTAT 을 만들어야 합니다. 다른 교직원은 적절한 경우, 고려할 수 있습니다만 학생 또는 학부모/후견인은 학교 BTAT 팀원이 될 수 있습니다.
2.
 - a) 특수 교육 서비스를 받는 학생이 협박을 했거나 학생이 협박을 받은 경우, 학교 BTAT 는 특수교육 경험이 있고 학생의 Individualized Education Program (IEP)를 아는 교직원을 팀에 포함해야 합니다.
 - b) 504 조항 플랜이 있는 학생이 협박을 했거나 학생이 협박을 받은 경우, 학생의 카운슬러 또는 504 조항 코디네이터/케이스 매니저가 꼭 팀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 c) 영어 학습자(English Language Learners-ELL)/외국어가 모국어인 영어 학습자(English for Speakers of Other Languages-ESOL) 서비스를 받는 학생이 협박을 했거나 학생이 협박을

받은 경우, 학교 BTAT 는 ELL/ESOL 경험이 있는 교직원을 팀에 포함해야 합니다.

2. 학교장/대리인은 학교 BTAT 리더이어야 하며, 학교 BTAT 리더는 팀원과 타 교직원과 협력하고, 필요한 경우 커뮤니티 리소스를 사용하여, 학교 BTAT 의 목표와 학교와 학생, 교직원의 안전을 도와야 합니다. 학교 BTAT 리더는 필요하고 적절한 경우, 교육청 BTAT 와 상의를 해야 합니다.
3. 모든 학교 BTAT 팀원은 다음의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
 - a) 효과적으로 케이스를 구분하고 케이스 매니저에게 제공, 다음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 1) 조치를 결정하고 기록
 - 2) 외부 리소스로 연계
 - 3) 관련된 모든 학생과 교직원에게 도움을 제공 그리고/또는
 - 4) 학교 환경과 분위기 요소를 관리
 - b) 은연 중에 발생하는 편견을 이해하고 인종과 민족 불평등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 장애와 다양성에의 각성을 육성
 - c) 위 Section II.A.2 에 명시된 바와 같이 “Pathway to Violence” 위협 평가 절차를 사용한 염려되는 행동을 분석
 - d) Family Educational Rights and Privacy Act (FERPA)을 포함한 학생 사생활 보호와 비공개 요건에 해당하는 학생과 SRO 양해각서(SRO MOU)¹와 관련 보고 프로토콜에 따릅니다.

¹ 전체 제목: *Reporting protocols for incidents that involve law enforcement are set forth in the MOU Between the MCPS and Montgomery County Department of Police and Montgomery County Sheriff's Office and Rockville City Police Department and Gaithersburg City Police Department and Takoma Park Police Department and Montgomery County State's Attorney's Office: SRO Program and Other Law Enforcement Responses to School-Based Incidents (SRO MOU)*

- e) Maryland Center for School Safety 의 서브 케비닛이 명시한 *행동적 위협 평가를 위한 모델 정책(Model Policy for Behavior Threat Assessment)*에 책정된 전략과 지침을 이해합니다.
4. 실행 가능하지 않을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학교 BTAT 팀원은 학교와 학생, 교직원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동을 취하는 개인에의 평가와 조치에 관여해야 합니다.
 5. 학교 BTAT 는 다음을 이행해야 합니다 -
 - a)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위협적 태도를 인식하고 이를 신고하는 절차에 관한 지침을 학생과 교직원에게 제공하고, 적절한 정보를 널리 알리도록 하며, 학교 BTAT 로의 자문과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확실하게 합니다.
 - b) 해당할 경우, 커뮤니티 서비스 기관 또는 헬스케어 제공 기관에의 인계를 포함하여, 행동이 학교 교직원 또는 학생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주장되거나 주장될 수 있는 행동을 한 개인의 평가하고 개입절차를 위해 MCPS 정책과 규정을 효과적으로 적용합니다.
 6. 각 학교의 BTAT 는 최소한 매월 모여야 하며 위협이 적다고 확인된 사건의 보고를 포함한 계류 중이거나 진행 중인 케이스를 검토해야 합니다. 학교 BTAT 는 교육구 BTAT 가 지정한 보고 절차에 따라 교육구 BTAT 에 계류 중인 케이스를 지속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7. 학교 BTAT 팀원은 학교 행정과 학교와 재학생, 교직원의 안전과 안녕을 돕는 특정 정보를 알 필요가 있는 타 교직원과 함께 능동적, 법적, 윤리적으로 서로 의사소통해야 합니다.

C. 위협을 알고 신고하기(Identifying and Reporting Threats)

1. 이 규정의 어떠한 것도, 생명과 안전을 임박하게 위협하는 직접적인 행동으로부터 MCPS 교직원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2. 모든 MCPS 학생, 교직원, 자원봉사자와 계약자는 모든 위협을 즉시 학교장/학교장 대행 또는 MCPS 교직원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받은 교직원은 정보를 학교장/대리인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3. 위협 신고를 받는 즉시, 학교장/대리인은 즉각적 위협이 존재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결정이 내려진 경우, 학교장/대리인은 교육위원회 정책, MCPS 규정과 규칙 그리고 SRO MOU 에 따라 법 집행기관과/또는 공공 안전 관련 기관에게 이를 알려야 합니다.
4. 위협 평가 활동의 여부에 상관없이 OSSI 에 이를 알리고 법 집행기관에 인계하는 것은 모든 교육위원회 정책과 MCPS 규정, 규칙에 요구되는 요건입니다.
 - a) MCPS Regulation EKA-RA: *비상사태 및 재난대비(Emergency and Disaster Preparedness)*
 - b) 교육위원회 Policy JHC, *아동학대와 아동방치(Child Abuse and Neglect)*와 MCPS Regulation JHC-RA, *아동학대와 아동방치의 신고와 조사(Reporting and Investigating Child Abuse and Neglect)*를 봅시다.
 - c) MCPS Regulation COB-RA, *사고 신고(Incident Reporting)*
 - d) *Montgomery County Public Schools 의 학생의 행동규범(Student Code of Conduct)*
 - e) SRO MOU
5. 부모/후견인에게의 통보
 - a) 법 집행기관의 협의에 따라 학교장/대리인은 신고된 위협과/또는 사건에 관련된 학생의 학부모/후견인에게, 의심되는 아동 학대나 방치 조사에 관련된 경우를 제외하고, 즉시 연락을 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 b) 학교장/대리인은 학부모/후견인에게 추후 정보를 위해 지역 법 집행기관이 연락을 취할 수도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
 - c) 아동 학대 또는 방치에 연관된 부모/후견인에게 알리는 것은 교육위원회 Policy JHC, *아동학대와 아동방치(Child Abuse and Neglect)*와 MCPS Regulation JHC-RA, *아동학대와 아동방치의 신고와 조사(Reporting and Investigating Child Abuse and Neglect)*를 따라야 합니다.

D. 초기 분류

1. 위협 신고를 받을 경우, 항목 III.C 에 책정된 적절한 신고 프로토콜에 따른 후, 위협은 학교 BTAT 리더에게 인계해야 합니다.
2. 임박한 협박이 현존하지 않을 경우 또는 임박한 위협이 일단 진화된 경우, 학교 BTAT 리더는 두 명 이상의 학교 BTAT 팀원을 임명하여 온전한 위협 평가 팀이 참여해야 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한 구분을 하게 됩니다. 최소 두 명의 팀원 중 하나는 학교의 정신 건강 교직원이어야 합니다.
3. 분류 절차에는 필요하거나 적절한 경우, 다음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
 - a) 첫 신고를 검토하고 위협 행동 또는 위협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추가 정보를 검토합니다.
 - b) 학교와 개인이 관련된 이전 또는 이전 조정에 관련된 타 기록을 검토합니다.
 - c) 위협에 관한 추가 및 적절한 정보를 취득하기 위해 SRO 또는 법 집행기관과 협의합니다.
 - d) 필요한 경우, 위협을 신고한 사람, 위협을 받거나 대상이 된 사람, 위협을 아는 증인, 합당할 경우, 위협 행동이나 위협 커뮤니케이션에 연결되었다고 여겨지는 개인과 적시 또는 빠른 시일 내에 철저한 인터뷰를 실시합니다. 이 인터뷰의 목적은 이 위협의 의미와 개인의 의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인의 위협을 전후 사정을 고려하여 평가하고,
 - e) 가능한 한 최대 신속하게 위협의 심각성과 유효성을 판단하며
 - (1) 기존의 리소스와 메커니즘의 강도가 이 문제에 충분한지 또는
 - (2) 전체 BTAT 가 앞으로 이를 평가하고 상황을 관리해야 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4. 학교 BTAT 리더는 필요에 따라, 다음을 포함하여 중재 서포트를 개발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 a) 학생의 일반교육과/또는 특수 교육, 커리큘럼 수강을 돕기 위한 사회-정서 행동 중재를 작성하기 위해 그리고 학생이 특수 교육을 위한 평가가 필요한지를 결정하기 위해 Educational Management Team(EMT)을 소집합니다.
 - b) 플랜과 기능 행동 평가(functional behavioral assessment-FBA) 실시를 위한 첫 절차로 행동 중재 계획(behavioral intervention plan-BIP)을 작성하기 위해(허락할 경우 및 아직 없을 경우) 학생의 504 조항 플랜 또는 IEP 팀을 소집합니다.
5. 만약 염려되는 사람이 MCPS 교직원일 경우, 학교장/대리인은 OEELR 에 즉시 이를 알리고 수집한 모든 기록과 분류팀이 검토한 서류를 교육구 BTAT 에게 제공합니다.
6. 만약 염려되는 사람이 MCPS 학생이 아닐 경우, 사건은 교육구 BTAT 로 즉시 인수인계해야 합니다.

E. 낮은 리스크 또는 리스트가 없는 위협

만약 조항팀이 위협이 없다고 판단하거나 폭력이나 상해의 위험이 낮아 폭력 예방을 위해 이 시점에서는 차후 평가, 중재, 모니터가 필요 없다고 판단할 경우, 다음을 적절하게 필요에 따라 배치해야만 합니다.

1. 판단 24 시간 이내에 학교 BTAT 리더는 사건과 분류 팀의 검토가 MCPS Incident Management System 에 적절하게 기록되도록 합니다.
2. 사건이 약자 괴롭히기/왕따, 희롱 및 협박으로 해석될 수 있는 행동일 경우, 학교 BTAT 리더는 MCPS Regulation 230-35, *약자 괴롭히기/왕따, 희롱 및 협박 행위 신고 양식(Bullying, Harassment, or Intimidation Reporting Form)*을 작성하고, 학교장/대리인은 MCPS Form 230-36, *약자 괴롭히기/왕따, 희롱 및 협박 사건 학교 조사 양식(Bullying, Harassment, or Intimidation Incident School Investigation Form)*을 작성합니다.
3. 자해나 자살 생각의 위험이 현존할 경우, 학교 BTAT 리더는 MCPS Form 335-54, *Suicide Risk Reporting Form* 을 작성하고 적절한 교직원이

자살 위험 평가검사를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학생을 Montgomery County Crisis Center 와/또는 학생의 개인 의료계 담당자에게 보냅니다. 학교 BTAT 는 학생이 타인을 상해 위협을 하는지를 조사할 때, 학교 BTAT 는 자해나 자살 생각의 위협을 함께 검사해야 합니다.

4. 아동 학대 또는 방치에 연관된 사건일 경우, 모든 절차는 교육위원회 Policy JHC, *아동학대와 아동방치(Child Abuse and Neglect)*와 MCPS Regulation JHC-RA, *아동학대와 아동방치의 신고와 조사(Reporting and Investigating Child Abuse and Neglect)*를 의무적으로 따라야 합니다.

F. 중간부터 높은 수준의 위협

1. 만약 조항팀이 위협이 존재하지 않거나 낮은 수준의 위협이라는 여겨질 합당한 수준의 확신이 없어 판단을 할 수 없을 경우, 더 깊이 있는 행동 위협 평가검사를 학교 BTAT 전원이 이를 담당하게 되며, 사건의 본질과 안전의 염려도를 결정하고 폭력을 예방하고 위험을 줄이는 전략을 개발합니다. 이 프로토콜은 일단 위협이 포함된 절박한 위협에 적용됩니다.
2. 학교 BTAT 리더는 chief safety officer 와 Psychological Services 의 디렉터 또는 대리인에게 학생의 폭력 위협 또는 신체적 상해에 관한 초기 판단을 교육감/대리인에게 보고할 것인지 그리고 사건을 검토하도록 초기 학교 BTAT 절차를 교육청 서포트를 받을지에 관한 자문을 구합니다. 학교 BTAT 리더는 지정된 MCPS 양식을 작성하여 chief safety officer 와 Psychological Services 디렉터나 대리인과의 상담을 기록해야 합니다.
3. 학교 BTAT 리더는 BTAT 검토에서 학생의 프라이버시를 위해 적절한 안전망을 구축합니다. MCPS 교직원이 아닌 학교 BTAT 팀원은 BTAT 회의를 시작할 때, 비밀보장과 비공개 서약서에 서명을 해야 합니다. 추가 비공개 준비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4. 행동 위협 평가는 다음을 포함, 그러나 이에 제한하지 않습니다.
 - a) 기록 검토

- (1) 위협 평가 팀에 있는 법집행기관 직원은 적절하다고 간주될 경우, 앞으로의 평가와 위협 평가를 위해 범죄 관련 기록 정보를 요청하고 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 (2) 학교 BTAT 가 기능에의 필요 연장 선에서 학생의 교육과 건강 기록에의 접근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 (3) 추가적 정보 수집 방법으로 학교 BTAT 의 검토를 위해 학생의 소셜미디어 어카운트, 인터넷 활동, 전화 통화, 기타 정보 또는 데이터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 b) 학교 BTAT 팀원인 법 집행 기관 담당자의 자문을 받고 SRO MOU 에 따라, 학교 BTAT 는 필요한 경우, 위협을 신고한 사람, 위협을 받거나 대상이 된 사람, 위협을 아는 증인, 합당할 경우, 위협 행동이나 위협 커뮤니케이션에 연결되었다고 여겨지는 개인과 적절하고 또 빠른 시일 내에 철저한 인터뷰를 실시합니다.
 - c) 이 인터뷰의 목적은 이 위협의 의미와 개인의 의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인의 위협을 전후 사정을 고려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 d) 아래 Section III.F.4 에 명시한 바와 같이 적절한 중재와 도움을 적용해야 합니다.
5. 학교 BTAT 는 염려되는 학생이 위 Section II.A.2 에 명시된 바와 같은 Pathway to Violence 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염려가 되는 행동과 조사에서 알게 된 사실의 분석을 실시합니다.
- a) 판단 결과 후, 24 시간 이내에 학교 BTAT 리더는 사건과 검토가 MCPS Incident Management System 에 적절하게 기록되도록 합니다.
 - b) 법 행정기관에게 자문을 받으며, 학교장/대리인은 염려되고 행동 위협 평가의 결과에 따른 목표인 학생의 학부모/후견인에게 SRO MOU 에 허용되는 한 빨리 통지를 보내야 합니다.

G. 협박의 중재, 모니터, 해결

모든 위협 행동 평가의 일부로 학교 BTAT는, 법 집행기관과 타 공공 안전 기관, 도움을 받기 위한 커뮤니티 서포트 기관을 포함한 가능한 리소스를 알리고, 또한 적절한 경우, 학생의 영려점과 잠재적 피해를 위한 케이스 매니지먼트 플랜을 적용 및 개발합니다.

1. 케이스 매니지먼트 플랜은 안전 전략, 책임자, 적용 타임라인과 도움이 효과적으로 제공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시스템을 설명합니다. 도움의 예로는 다음을 포함 그러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스케줄의 재조정, 연락 제한의 배치, 커뮤니티 리소스로의 개별 카운슬링 추천 제공, 의료 서비스 또는 학업적 도움 그리고/또는 학교 안전 계획의 개발
2. 효과적인 케이스 매니지먼트는 적절하고 실행 가능한 다음을 포함 그러나 이에 제한하지 않는 조치를 포함합니다 -
 - a) 폭력 행위를 하는 대상을 완화, 견제, 조정하기
 - b) 약한 목표 대상이 되는 경우를 줄여 감소하기
 - c) 신체적 그리고/또는 문화적 환경을 변경 조정하고 이의 증대와 확대를 저하시키기
 - d) 반작용을 이르기 수 있는 사건의 증폭을 대비하고 이를 완화하도록 하기 학생이 폭력 위협을 취했다고 판단될 경우, 학교 BTAT는 위협을 중재하고 줄이기 위한 개별 계획을 개발, 적용, 모니터해야 합니다.
 - e) 공공 기관의 중재가 추가로 필요한 경우, 법 집행 기관에게 알립니다.

IV. 학생 기록

- A. BTAT 팀원은 위협 평가에 따른 어떠한 범죄 기록 정보 또는 규정된 활동을 유지하기 위해 BTAT가 만든 조치 목적 이외의 개인 정보를 다시 들출 수 없습니다.
- B. BTAT는 개인의 범죄기록을 이 기능에 따라 가지고 다닐 수 없으며 사본을 만들 수도 없습니다.

- C. 범죄기록 정보는 FERPA, 34 CFR §99.3 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학생의 교육관련 파일에 보관하지 않습니다.
- D. MCPS 교직원이 아닌 모든 학교 BTAT 팀원은 학생의 기록에의 비밀보장과 학생 기록의 재폭로를 제한하는 서류에 서명을 해야 합니다.

관련 자료: Family Educational Rights and Privacy Act (FERPA), 20 U.S.C. §1232g, 34 CFR Part 99; Protection of Pupil Rights Amendment (PPRA), 20 U.S.C. §1232h, 34 CFR Part 98, (2000 and Supp. IV 2004); Maryland Student Data Privacy Act of 2015, Annotated Code of Maryland, Education Article, §4- 131; Maryland Safe to Learn Act, Md. Code Ann., Educ. §7-1507; MSDE Model Policy for Behavior Threat Assessment

규정 변경사: 새규정, 2019 년 8 월 26 일

메모: COA-RA, *School Visitors* 로 분류된 MCPS 규정은 2008 년 7 월 1 일 MCPS Regulation ABA-RB 로 통합 및 폐지되었습니다.